

「평창군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심 사 보 고 서

1. 심 사 경 위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출자 : 2013. 8.19(월) 평창군수
- 나. 회부일자 : 2013. 9. 10(화)
- 다. 상정일자 : 2013. 9. 10(화) 제195회 평창군의회 임시회
제1차 조례특위 상정

2. 제안설명의 요지

(제안자 : 주민생활지원과장)

- 2011.3.30.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및 2012.12.28. 대한노인회 강원도 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,
- 평창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자 “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지원조례”를 제정하고자 함.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(전문위원 : 홍금숙)

- 본 조례는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지원을 위하여 『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』 근거로 평창군 자체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“대한노인회 강원도 연합회 지원에 관한 지원조례”는 2012년 12월 28일 제정되었으며 도내 시·군중 군 노인회 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현재 속초시가 제정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

○ 조례상 지원대상은 『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』, 『조직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』, 『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』, 『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』, 『취업활동 및 사회적기업지원에 관한 사항』, 『생활촉진에 관한 사항』, 『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』, 『노인의 날 및 경로의 날 행사에 관한 사항』 등으로써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항을 명문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.

본 조례가 제정될 경우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에 차량을 지원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되며 군지회에 대한 차량지원은 영월군·정선군은 이미 지원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
본 조례안을 보면 지난 제19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하여 마련된 “평창군 노인복지증진에 지원에 관한 조례안”과 지원대상이 유사함을 알 수 있으나 최근 노인정책 활성화라는 좋은 취지에서 지원한 것이 자칫 공직선거법등에 위배되는 사례가 타 지역에서 종종 발생하는 것을 볼 때

“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조례안”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판단되며 기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6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【붙임】 평창군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창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대한노인회 평창군지회(이하 "군지회"라 한다)의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3조(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) 평창군수(이하 "군수"라 한다.)는 군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「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다.

제4조(비용의 보조 등) 군수는 군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 대상) 제4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군지회 조직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(차량지원 포함)
2.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
3.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·운영에 관한 사항
4.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

5.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

6.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·교육훈련·학술 진흥·홍보출판·국제교류 등의 업무

7. 노인의 날 및 경로미의 달 행사에 관한 사항

8.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

제6조(지도·감독 등) ① 군수는 군지회의 지원 사무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할 수 있다.

② 군수는 군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,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제7조(준용)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「평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